

보건의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약사진보포럼 2012, 대방동 여성플라자
2012년 3월 10일 (토)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혜주

개요

- 정의란?
- 인권적 관점에서 건강권
- 건강형평성의 윤리
- 모든 이의 건강을 위한 정책적 과제
- 무엇을 할 것인가?

Acknowledgements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희강교수님
-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신영전교수님

정의란?

정의의 다양한 아이디어들

정의(正義)의 정의(定意)

-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
-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 실제로는 애매모호한 개념이며, 철학 영역에서는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다
-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Social Justice: Definition

- The idea of creating a society or institution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solidarity**, that understands and values **human rights**, and that recognizes **the dignity of every human being**
- Based on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equality and involves a greater degree of economic egalitarianism through progressive taxation, income redistribution, or even property redistribution
- These policies aim to achieve what developmental economists refer to as more **equality of opportunity** than may currently exist in some societies, and to manufacture **equality of outcome** in cases where incidental inequalities appear in a procedurally just system

사회정의: 神과 人間

- Jesuit Luigi Taparelli (1840)
- Antonio Rosmini-Serbati (1848)
- John A. Ryan(moral theologian): living wage
- Father Coughlin (1930s~1940s)
- Catholic social teaching, the Protestants' Social Gospel, one of the Four Pillars of the Green Party

- John Rawls (20세기 후반)

존 롤스의 정의론 中 (1971, 3)

- 정의는, 진실이 사고체계의 첫번째 덕목인 것과 같이, 사회제도의 첫번째 덕목. 법과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당(unjust)하다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함.
- 사회는 협력적 사업(venture)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반목이 특징이기도 함
- 이해를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결정 중 선택하고 적절한 분배적 몫을 정하기 위하여 어떤 원칙이 필요함
- 이러한 원칙은 사회적 정의의 원칙임
 - 사회의 기초적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우는 방법을 제공
 - 사회적 협력의 이득과 짐을 분배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의

공공정책에 있어서 정의의 의미

- 몰가치적/수단적 정책연구에 대한 비판
- 정책연구에 있어 가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 가치 판단(규범/정의의 원리)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연구는 기본적으로 불가능
- 핵심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의 총합을 다루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제도, 정책, 법의 규범적인 작동원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함
- 근본적으로 정책/제도에 있어서 철학적 사고의 필요성(박정택 2010)

정의의 원칙(규범의 기준)

1. 공리주의(utilitarianism)
2.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3.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4.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5. 인정의 정치/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identity politics)
6. 맑스주의적 정의론

공리주의 (Utilitarianism)

- 제레미 벤담(1748-1832):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s(1789)
-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Utilitarianism(1861)
- 18세기와 19세기를 풍미한 도덕론

공리주의의 원칙과 기반

- 도덕적·정의적 원칙의 기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효용의 원칙: “By utility is meant that property in any object, whereby it tends to produce benefit, advantage, pleasure, good, or happiness to prevent the happening of mischief, pain, evil, or unhappiness to the party whose interest is considered”(Bentham 10).
- 효용의 원칙 = 선악의 원칙 = 행복과 고통의 원칙
- 효용(행복)은 계산 가능

공리주의의 특징

- 도덕성과 정의의 기반이 행복
- 행복은 자명한 원칙
 - 인간 욕망의 목표는 오직 행복
 - 다른 목표는 행복에 도달하는 도구이거나 행복의 정의에 포함
- 평등: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단위
- 사회적(전체) 행복과 커뮤니티의 효용에 관심
- 비판
 - 효용은 행동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음. 결과중심적 도덕을
 - 집단적 효용의 증대를 위해 개인적 권리가 침해될 위험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The Constitution of Liberty*(1960)
- 로버트 로직: *Anarchy, State, and Utopia*(1974)

자유시장주의의 원칙과 기반

- 정의의 기반은 (경제적) 자유권(a right to economic liberty)
- 자유시장, 작은 정부
- Laissez-faire: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자유의 권리를 갖고 있음 –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자기-소유권(Self-ownership): a theory of entitlement (John Locke's property rights)
- “The general outlines of the theory of justice in holdings are that the holdings of a person are just if he is entitled to them by the principles of justice in acquisition and transfer, or by 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injustice (as specified by the first two principles). If each person's holdings are just, then the total set(distribution) of holdings is just” (Nozick 62).

자유지상주의의 특징

- A set of holdings unpatterned; historical principles of justice (\leftrightarrow end-result principles; distributional patterned theory of justice eg. the utility principle; Rawls's theory of justice)
-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entitlement theory, redistribution is a serious matter indeed, involving, as it does, the violation of people's rights” (Nozick 68)
- Taxation as forced labor
 - “taking the earnings of n hours labor is like taking n hours from the person; it is like forcing the person to work n hours for another's purpose” (Nozick 68-69).
 - “Indeed, isn't it surprising that redistributionist choose to ignore the man whose pleasures are so easily attainable without extra labor, while adding yet another burden to the poor unfortunate who must work for his pleasure?” (Nozick 69)

정치적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

- 존 롤스(1921-2001): A Theory of Justice (1971); Political Liberalism (1993)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반과 원칙

- 정의는 공평한 것(Justice as fairness)
 - Different bargaining positions
 - Making fair conditions -> principles contracted in the fair conditions
- Original position
 - A purely hypothetical situation
 - Among the essential features of this situation is that no one knows his place in society, his class position or social status (Rawls 205)
- Veil of ignorance
 - Fundamental agreements reached in it are fair. This explains the propriety of the name “justice as fairness”
 - “If a knowledge of particulars is allowed, then the outcome is biased by arbitrary contingencies” (Rawls 221)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반과 원칙 (계속)

- Rawls 2001, 42-43: 13.1 To try to answer our question, let us turn to a revised statement of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discussed in Theory, §§11-14. They should now read:
 - (a) Each person has the same inalienable claims to a fully adequate scheme of equal basic liberties, which scheme is compatible with the same scheme of liberties for all; and
 - (b)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satisfy two conditions: first, they are to be attached to offices and positions open to all under conditions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second, they are to be to the greatest benefit of the least-advantaged members of society (the difference principle).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반과 원칙 (계속)

- Equal liberty
-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 Difference principle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반과 원칙 (계속)

- Difference principle

- ① the principle of redress: the principle that undeserved inequalities call for redress (since inequalities of birth and natural endowment are undeserved, these inequalities are to be somehow compensated for) (Rawls 217)
 - ② the direction of equality: “in pursuit of this principle greater resources might be spent on the education of the less rather than the more intelligent, at least over a certain time of life, say the earlier years of school” (Rawls 217).
 - ③ The conception of reciprocity: “the distribution of natural talents as a common asset and to share in the benefits of this distribution whatever it turns out to be” (Rawls 218).
- ▶ the liberal case for welfare state depends not a theory of common good or no some strong notion of communal obligation, but instead on the rights we would agree to respect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 알라스데어 매킨타이어: *After Virtue* (1981)
- 마이클 샌델: *Democracy's Discontent* (1996)
- 마이클 왈처: *Spheres of Justice* (1983)

- 1980년대
-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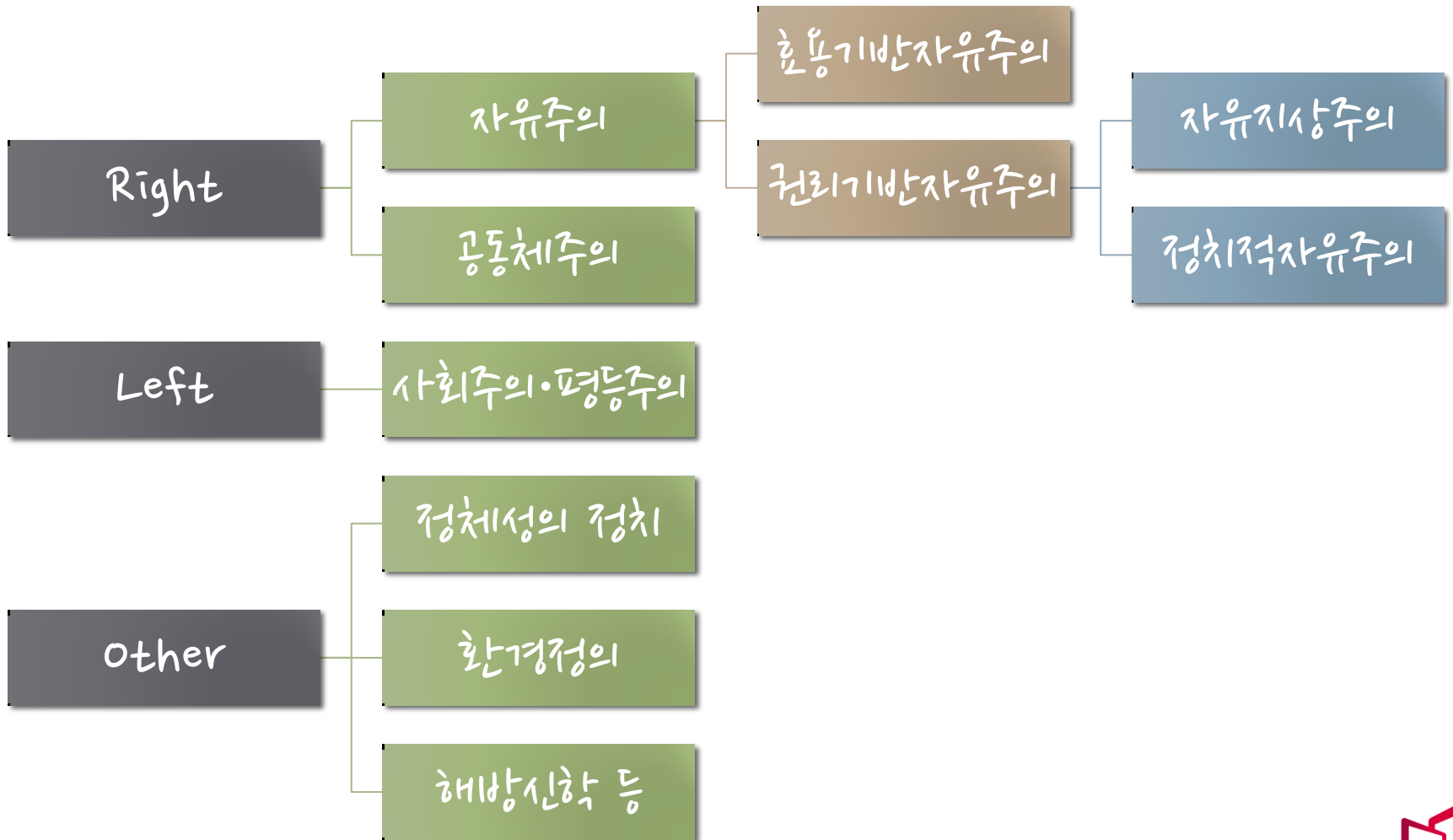
공동체주의의 특징

-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 공동체와 전통을 강조: “what I am, therefore, is in key part what I inherit, a specific past that is present to some degree in my present...bearers of a tradition” (MacIntyre 326).
- 멤버십과 소속감(belonging)이라는 개념
- 맥락화되고(contextualized) 착종된(embedded) 자아로서 개인이라는 개념
- 선이라는 개념 (perfectionism)
- 미덕(Virtue)과 도덕성

사회주의적·평등주의적(egalitarian) 정의론의 몇가지 쟁점

- 이론적 반인간주의(알튀세): “인간주의는 공산주의의 ‘미시’”
-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
- 분배 정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정리: 정의론의 다양한 아이디어



인권적 관점에서 건강권

알마-아타 선언 (1978)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 was convened in Alma-Ata, Kazakhstan, in 1978, and was attended by virtually all the member nation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UNICEF
- The Alma-Ata Declaration of 1978 emerged as a major milestone of the twentieth century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it identified primary health care (PHC) as the key to the attainment of the goal of Health for All (HFA)

알마-아타 선언 (계속)

- Health is,
 -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the attainment of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health is a most important world-wide social goal whose realization requires the action of many other social and economic sectors in addition to the health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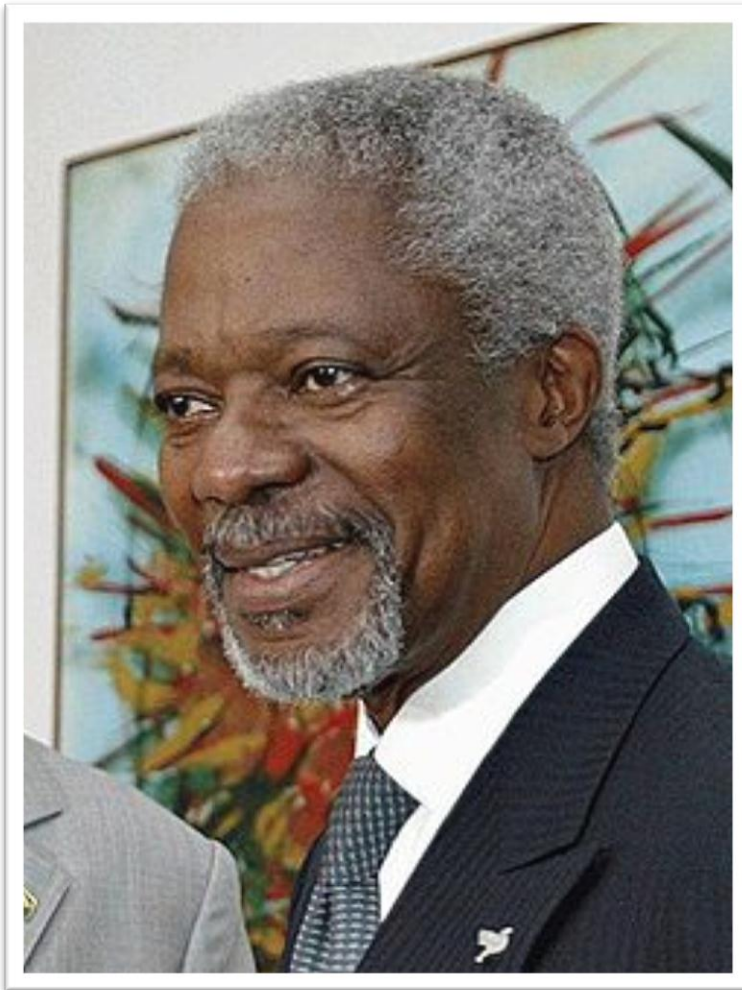
알마-아타 선언 (계속)

- The existing gross inequality in the health status of the people, particularl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within countries, is politic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unacceptable and is, therefore, of common concern to all countries
- The people have a right and duty to participat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ir health care.

알마-아타 선언 (계속)

- **An acceptable level of health for all the people of the world by the year 2000** can be attained through a fuller and better use of the world's resources, a considerable part of which is now spent on armaments and military conflicts.
- A genuine policy of independence, peace, détente, and disarmament could and should release additional resources that could well be devoted to peaceful aims and in particular to the acceleration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which primary health care, as an essential part, should be allotted its proper share

Health and Human Rights



- “It is my aspiration that health will finally be seen not as a blessing to be wished for, but as a human right to be fought for.”
- Kofi Annan (2002)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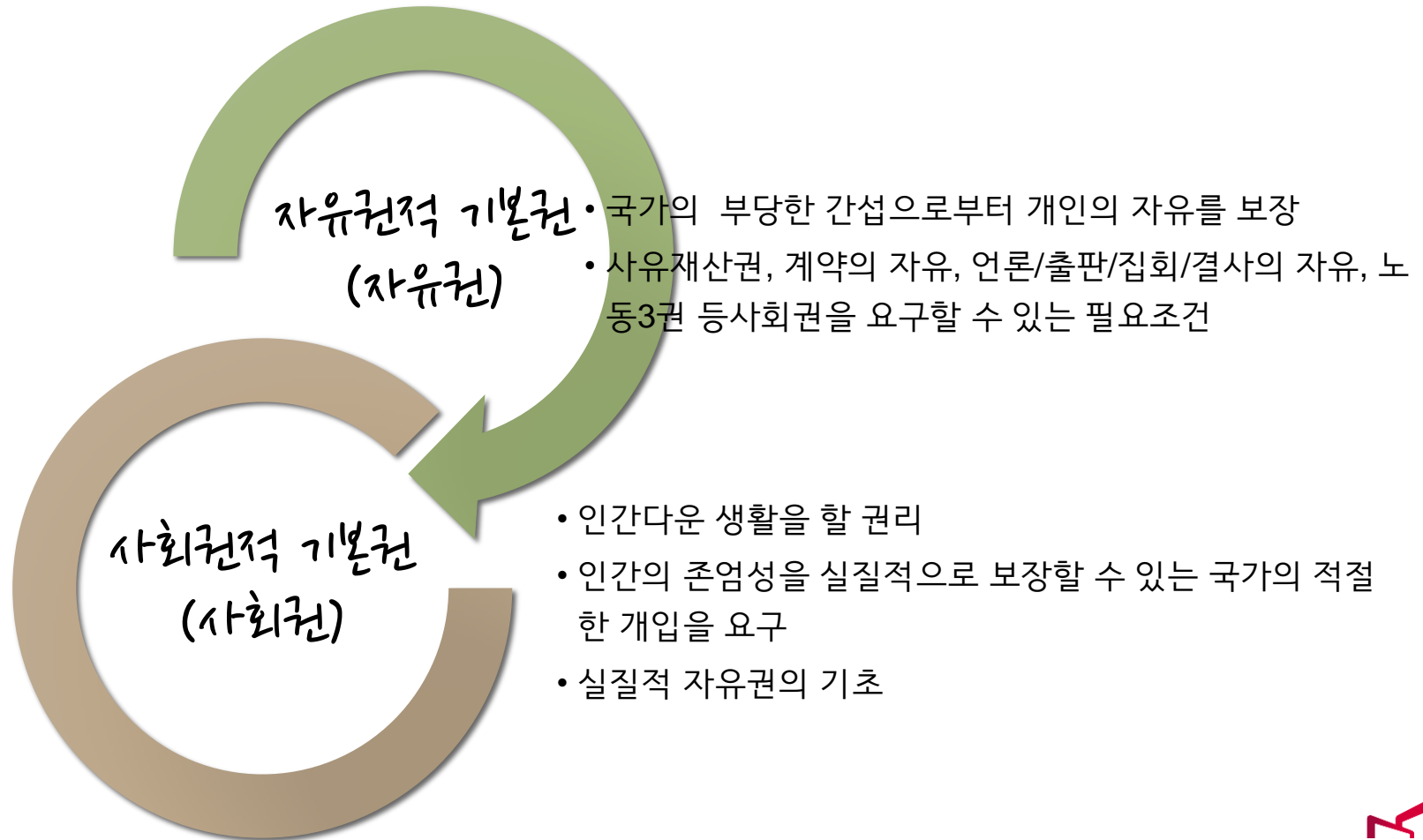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
-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 자유와 안녕 그리고 복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인권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임의로 가져가거나 빼앗을 수 없다

국제인권규약 (Landsman (2006), 2004년 현재)

조약	비준 일자	참가국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	152 (7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149 (7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PT1)	1976	104 (5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제 2차 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PT2)	1989	50 (2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1966	169 (87%)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	177 (9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84	136 (70%)
아동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	192 (99%)

인권 (계속)



시민권의 시대적 발전양상

	공민권 (Civil Rights)	정치권 (Political Rights)	사회권 (Social Rights)
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원칙	개인적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복지
수단	출정영장제, 의사표현과 사상, 신념의 자유, 법률적 계약을 맺을 자유	선거권, 의회개혁, 직업정치인의 등장	무상교육, 연금, 국민보건서비스 (복지국가)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독일)

- 20세기 인권 발전의 시발점
-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권을 규정
- 제151조: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확보된다
- 제153조: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의 복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기타 단결권의 보장(제159조)과 근로자의 필요생계에 대한 배려(제163조), 그리고 경제협의회 제도(165조) 등은 현재까지도 사회권의 기본 골격을 제공

사회권의 정의

-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국가적 급부·배려에 관한 권리
- 적정한 경제적 보장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완전한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그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화적인 존재로서 생활을 영유하는 권리 (Marshall & Bottomore, 1992)

사회권의 개념과 성격

-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규약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보편성 (e.g., ILO 등)
-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제34조)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내용으로 하며, 헌법상의 보장과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통해 실현
- ‘생존권적 기본권’(88헌마3),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89헌가106), ‘사회적 기본권’(96헌가6) 등

사회권의 해석

- 프로그램 규정설
- 추상적 권리설
- 구체적 권리설
-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사회권의 영역

세계인권선언

- 제22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제23조 노동의 권리
- 제24조 휴식, 여가의 권리
- 제25조 건강,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제26조 교육받을 권리
- 제27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항목

- 제6조 노동의 권리
-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의 권리
- 제8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제9조 사회보장권
- 제10조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
- 제11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주거권, 식량권)
- 제12조 건강권
- 제13조 교육권
- 제14조 무상의무초등교육의 권리
- 제15조 문화권, 과학권

안치민 (2006)

-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권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 경제적 권리: 노동권
- 문화/ 환경적 권리: 문화권, 환경권

건강권: 국제조약

International Instruments	Key Article(s)
Constitution of the WHO (1946)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without distinction of race, religion, political belief, economic or social conditio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Article 25(1): “Everyone has a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u>health</u> of himself and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p>Article 12(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s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p> <p>Article 12(2): Illustrates the breadth of areas that needed to be addressed and other human rights that have be addressed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p>

건강권: 국제조약 (계속)

International Instruments	Key Article(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3)	Article 5(e)(iv): States undertake to prohibit and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and equality before the law, in respect to “The right to public health, medical care,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rvice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Article 12(1): “State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field of health care in order to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family planning.”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1989)	Article 24(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o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illness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States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no child is deprived of his or her right of access to such health care services.

건강권: 대한민국 헌법적 기본권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건강권: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건강권: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건강권: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 ① 보건의료인은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권: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건강권 등)

-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건강권: 보건의료기본법 자유권적 권리

-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건강권: 의료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권: 의료법 (계속)

-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건강권: 소비자기본법

-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건강권: 환자권리장전 (2004년 7월 병원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 채택)

- 하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둘, 질병, 연령, 성별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 셋,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종사자로부터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 넷,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다섯,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내용 및 결과를 충분히 알 권리
- 여섯,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기타 진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
- 일곱, 자유 의사에 따라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를 선택, 수락 또는 거부할 권리
- 여덟,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나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 아홉, 정당한 이유 없이, 질병과 치료 및 사생활에 관해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열, 의료 사고로 인한 진료상의 악결과에 대해 원인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자유권적 건강권과 사회권적 건강권

자유권적 성격이 강한 건강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건강권
알 권리 치료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한 작업, 생활환경의 확보권리

건강형평성의 윤리

Why Health Equity?

용어 정의

- **건강불평등 Health inequality**: the generic term used to designate differences, variations, and disparities in the health achievements of individuals and groups
- **건강불형평 Health inequity**: those inequalities in health that are deemed to be unfair or stemming from some form of injustice

- Kawachi, I., Subramanian, S.V., Almeida-Filho, N. (2002). A glossary for health inequalitie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6:647-652.

The Inverse Care Law



“The availability of good medical care tends to **vary inversely** with the need for it in the population served. This [...] operates more completely where medical care is most exposed to **market forces**, and less so where such exposure is reduced.”

- Julian Tudor Hart. (1971).
The Lancet.

건강형평성과 사회적 정의 (Sen)

- 건강수준과 건강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획득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기관(facilities)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의료서비스의 분배로 건강형평성을 이해할 수는 없음”
- 과정과 과정에 있어서의 공평성이 사회적 정의와는 불가결한 연관성을 갖지만 우리는 건강수준(health achievement)과 건강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to achieve health)을 넘어서야 함 – “정의와 형평성의 과정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

건강형평성과 사회적 정의 (계속)

- 건강형평성은 건강이나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에만 연관되지 않으며 자원의 분배(allocation)와 사회적 관례(arrangements)가 어떻게 건강을 다른 것들(other features of states of affairs)에 연결시키는지를 유념해야 한다. [...] 건강형평성의 위배는 건강의 불평등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의료서비스 증대(promotion)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는 의료서비스 내의 분배적 결정 보다는 건강에 자원 배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깊게 의존한다. [...] [그러나] 건강불평등은 건강불형평과 같지 않지만 전자는 후자에 당연히도 관련되어 있다.

건강의 결정 요인

- 건강의 광범위한 사회적 결정요인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19세기에 시작되어 (e.g., Villermé 1830; Virchow 1848; Engels 1958 [1845]) 최근까지 (e.g., Preston 1975; McKeown 1976; Rodgers 1979; Wilkinson 1996; Berkman and Kawachi 2000; Link and Phelan 2002) 계속되어 왔음
- 특히 보건정책 분야에서는 1974년 캐나다에서 발표된 라롱드 리포트(Lalonde 1974)의 건강장 (The Health Field Concept) 개념을 경유하면서 생의학적 관점을 넘어선 환경적 관점 (ecological perspective)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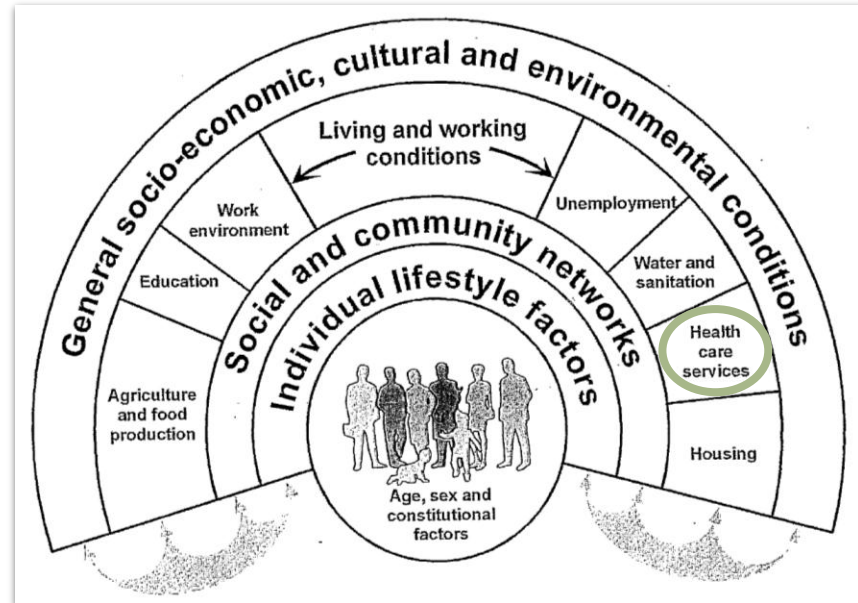
건강의 결정 요인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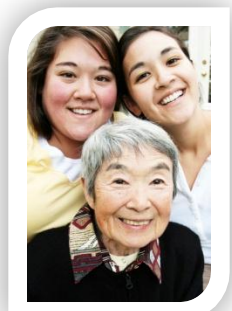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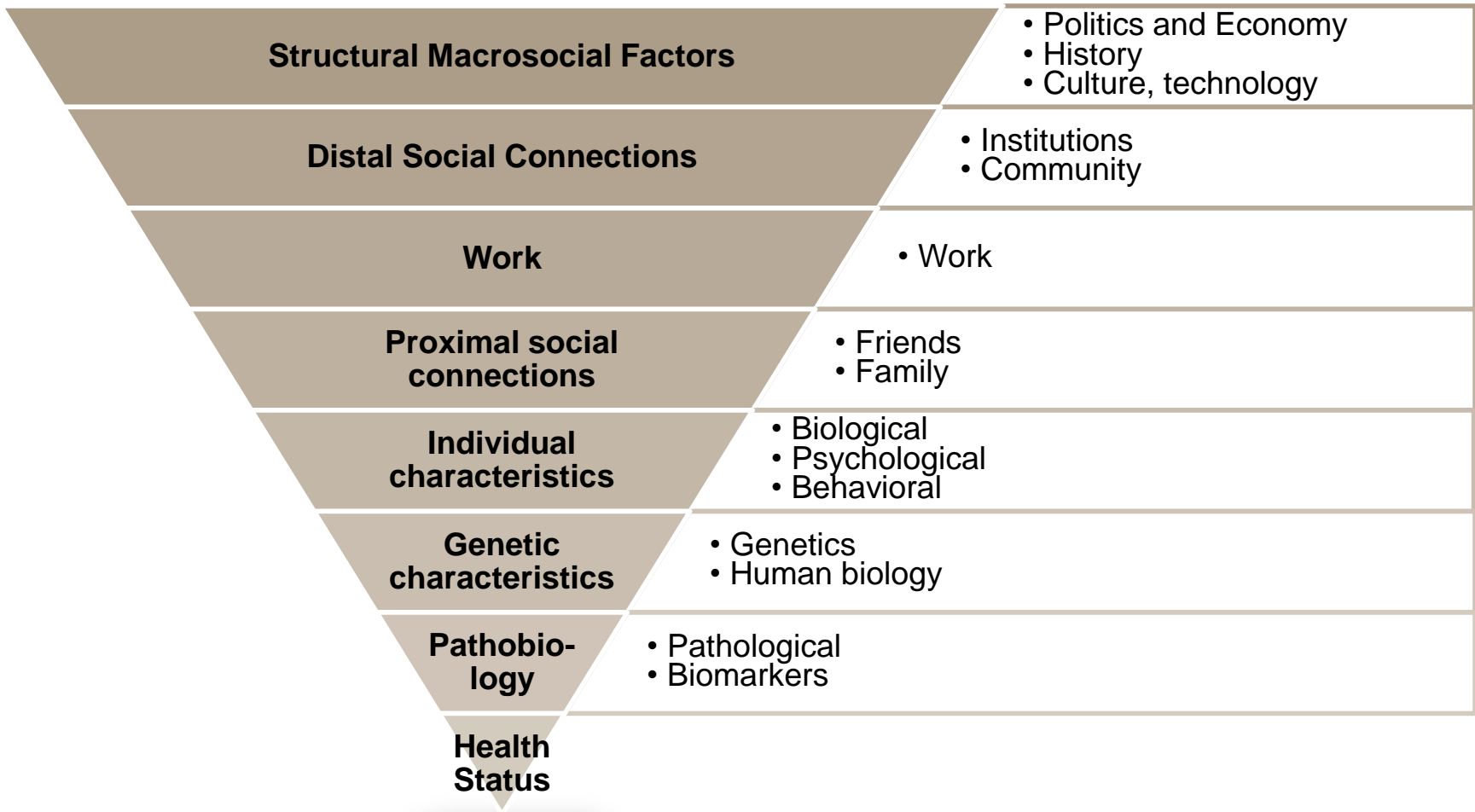
- 건강장 개념에서는 건강의 장을 인체생물학 뿐 아니라 환경,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음.
- 환경적 관점에서 건강은 쉽게 목표로 삼아서 제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진단, 증상, 위험 인자로 구분되지 않으며, 건강 문제는 다수의 원인을 가지며 서로 연관되어 있음 (Milio 1988)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

The main determinants of health
(Dahlgren and Whitehead 1991)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개념도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의 기반 하에서 농업과 식량 생산, 교육, 근로환경, 실업, 식수와 상하수도 등 위생, 보건의료서비스, 주거를 포함하는 생활 및 근로조건이 사회 및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개인적 라이프스타일을 거쳐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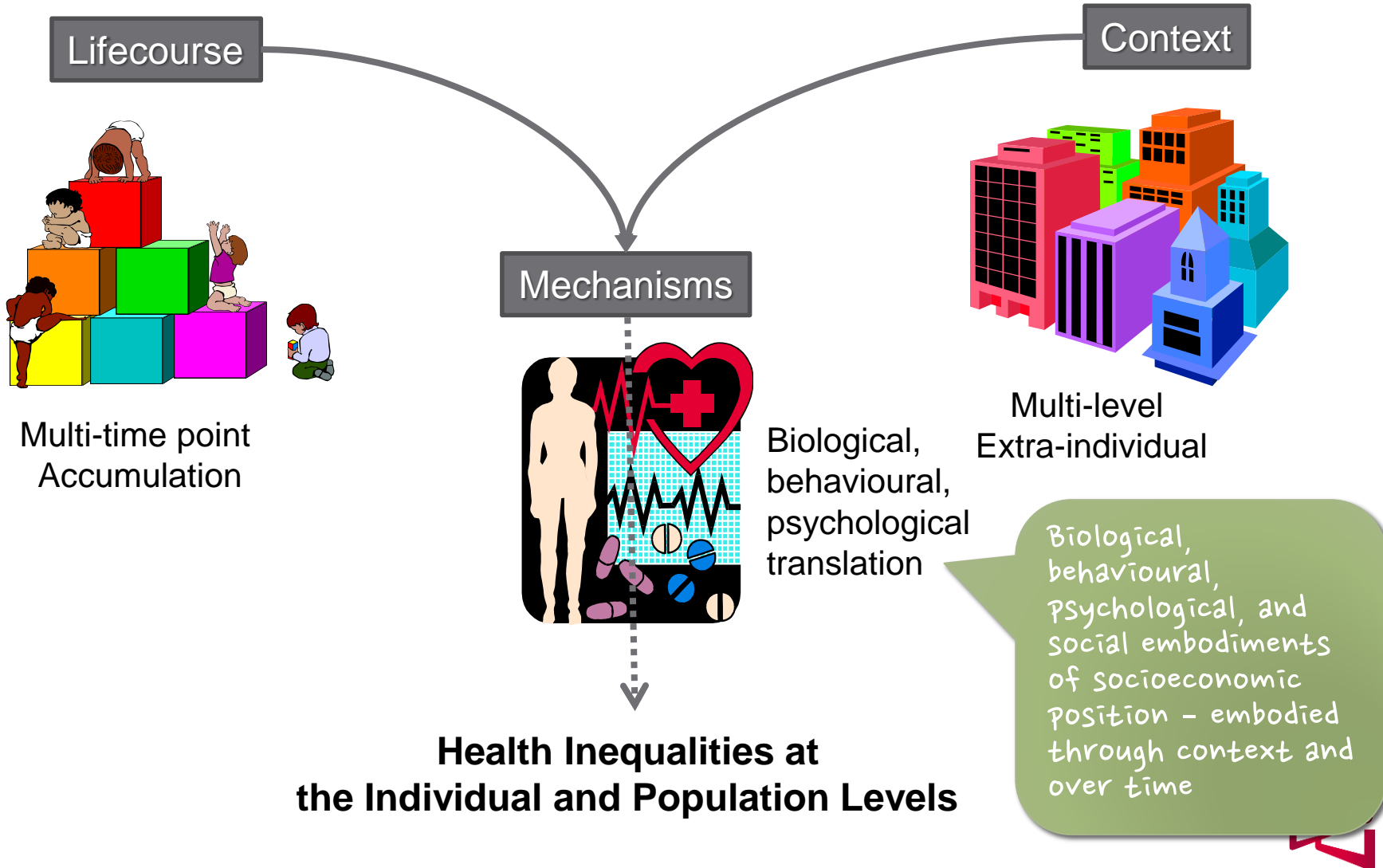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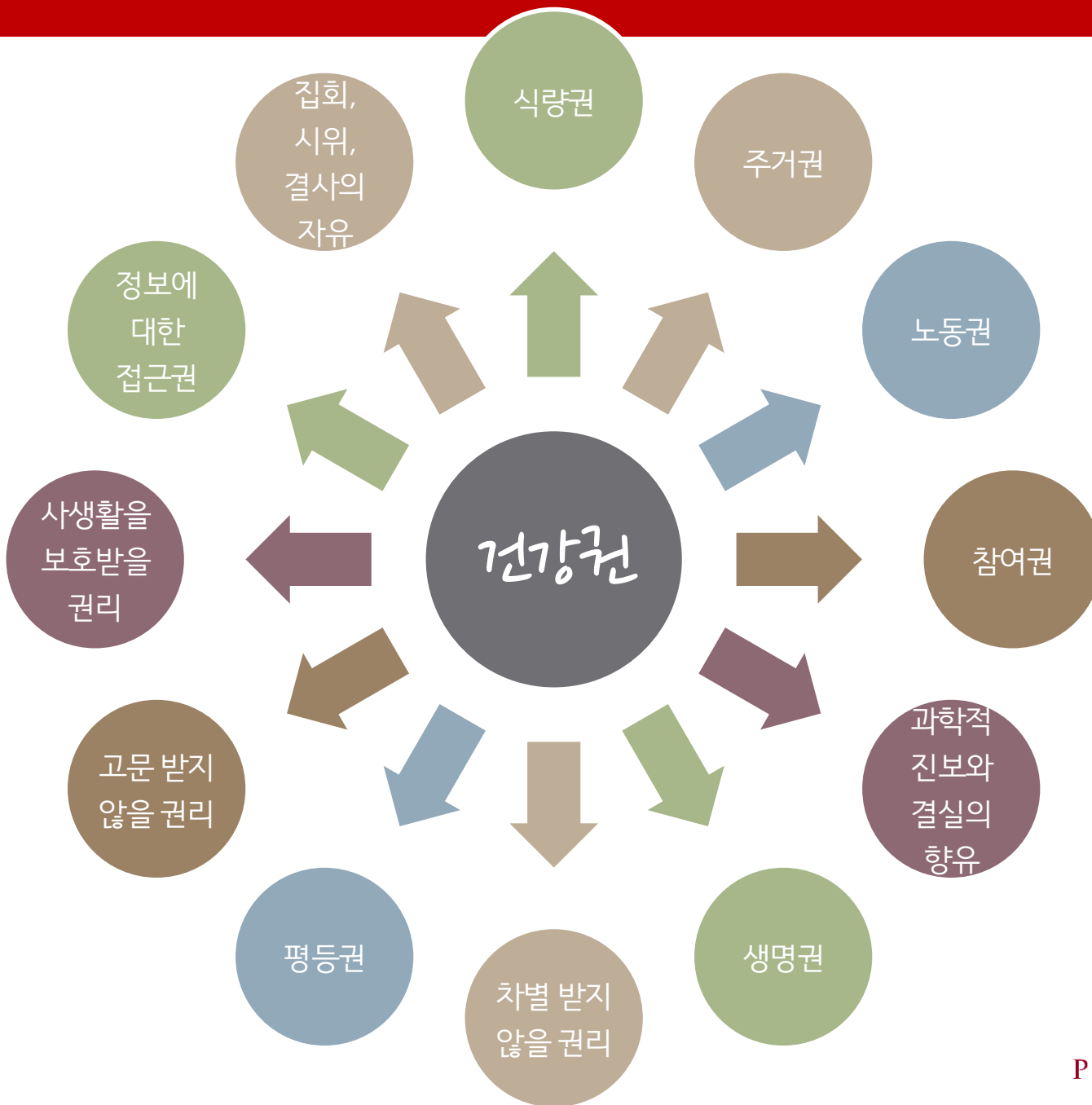


Conception

Lifecourse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





WHO 건강의 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 (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Health is more than
medical care”

http://www.who.int/social_determinants/en/

- 건강의 사회적결정요인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며, 살고, 일하고, 나이드는, 보건의료시스템을 포함하는, 조건 (conditions)
- 이것은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돈과 권력, 자원의 분배에 따라 결정. 이러한 분배는 또한 정책적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건강형평성의 대부분을 결정함
- 위원회 보고서의 결론
 - 매일의 생활환경 개선
 - 권력, 돈, 자원의 불형평한 분배에 문제 제기
 - 건강불형평성을 측정, 이해하며, 활동의 효과를 평가

건강불형평성 (health inequity)

- 이러한 사회적 결정요인은 특히 건강불평등과 관련
- 정의: 국가 내와 국가 간에 관찰되는 부당하고 (unfair) 피할 수 있는 (avoidable) 건강 수준의 차이 (WHO CSDH 2008)
- 건강불평등의 개념은 보건학의 정의 그 자체를 이룰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즉, 보건학은 인구집단 수준에서의 건강을 다루는 것이고, 한 인구집단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다른 인구집단과의 건강상의 격차 때문
- WHO는 1977년 2000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을 (Health for All by 2000)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1978년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알마-아타 선언>을 채택 (WHO/ UNICEF 1978)

건강을 위한 다부문 협력

-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일차의료 이후 건강을 위한 다부문협력과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확대
-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을 위한 근본적 조건과 자원은 평화, 안식처, 교육, 식량, 소득, 안정적인 생태계, 지속가능한 자원, 사회적 정의와 평등이라 정의
- 건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행태적, 생물학적 인자들에 의해 결정. 따라서 건강 증진은 건강을 위한 advocacy를 통해 이러한 조건들을 더욱 건강친화적으로 변화 시켜나가는 것. 그리고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것.

건강을 위한 다부문 협력 (계속)

-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 헌장>에서는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부문(보건의료시스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부문과 행위자들의 공통의 노력이 필요함을 재확인. 이 헌장에서는 ‘건강을 위한 다부문 협력’을 더 발전시켜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y)라는 개념을 제시함.
- “새로운 공중보건은 따라서 모든 공공정책이 공공의 건강적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new public health thus asserts that all public polic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health interests of the public.)” (Milio 1988)

건강윤리적 (Health Ethics) 관점

- “건강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Anand, Peter et al. 2004)지만, 여전히도 많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나 건강 불평등에 대한 방대한 실증적 문헌들이 건강 형평성 (equity) 이라는 규범적 토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Anand, Peter et al. 2004)음
- 따라서 인권을 중심으로 건강을 사고하는 것은 건강 형평성에 규범적 기준을 둔다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정의에 그 기준의 둔다는 것과 동일. (Rioux 2006)

건강윤리적 (Health Ethics)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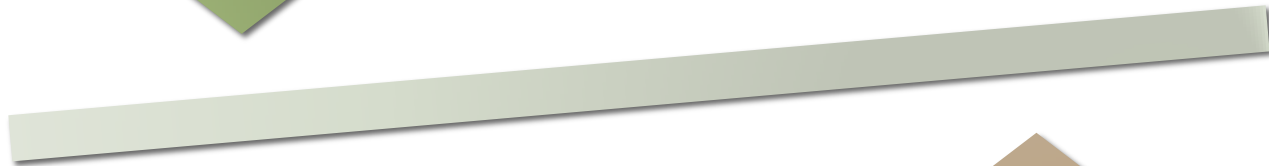
- 건강은 그 자체로서 획득해야 할 개인적/사회적 가치임과 동시에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넘어서는 함의를 갖는다면 (Sen 2002), 건강 그 자체를 사회적 규범으로 삼는 것(건강 윤리)도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 볼 수 없음. (Roux 2006)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관점은, 모든 이들의 건강 (health for all)을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평등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줌. 즉, 건강윤리는 건강형평성을 사회운영의 원리로 삼는 것.

건강윤리 vs. 의료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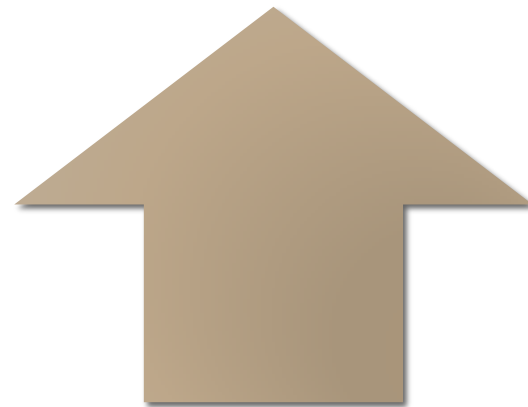
의료윤리

- 주로 임상실험 과정에서의 윤리, 그리고 진료 과정에서의 윤리 등이 중심
- 즉, 의료진이 윤리의 담지자가 되고 환자는 의료진이 윤리적으로 의료행위나 실험을 행할 것임을 믿는 것



건강윤리

- 건강 그 자체를 사회적 규범으로 삼는 것(건강 윤리)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관점은,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평등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줌 -> 건강윤리는 건강형평성을 사회운영의 원리로 삼는 것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사회정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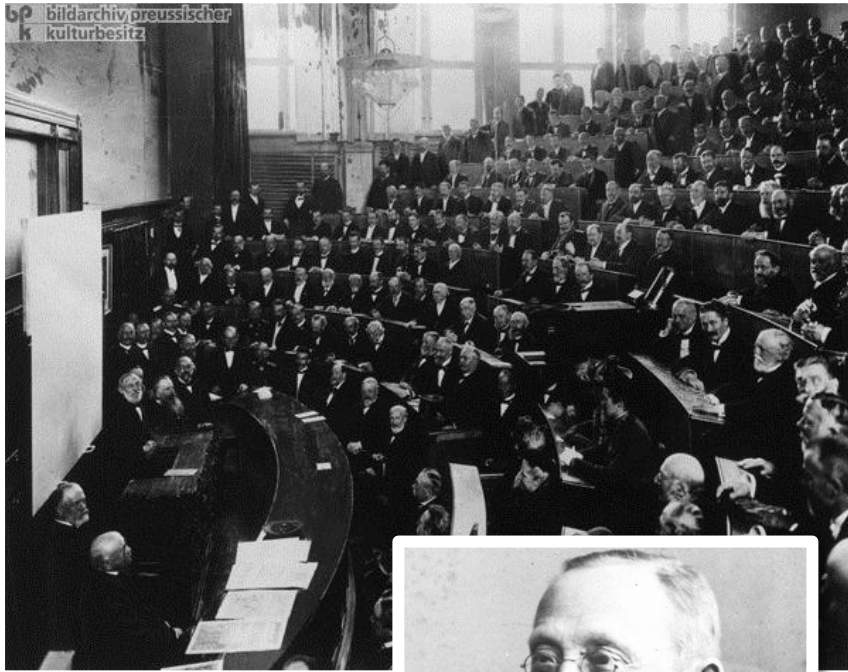
- First, social justice demands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collective goods, institutional resources (such as social wealth), and life opportunities
- Second, social justice calls for **democracy** – the empowerment of all social members, along with democratic and transparent structures to promote social goals. This is another way of describing political equality

- Hofrichter 2003:13

무엇을 할 것인가?

- 개별적인 약사로서, 약사 집단으로서, 보건의료인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최근의 의약품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건강윤리적 관점에서 어떤 발언과 행동을 할 것인가?
- 국제적 건강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학은 사회과학이며, 정치는 큰 수준의 의학에 다름아니다



Medicine is a social science, and politics is nothing else but medicine on a large scale. Medicine, as a social science, as the science of human beings, has the obligation to point out problems and to attempt their theoretical solution: the politician, the practical anthropologist, must find the means for their actual solution.

The improvement of medicine will extend human life, but the improvement of social conditions will permit to reach this result quicker and more successfully. [...] Th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ull and unlimited democracy.

감사합니다

hpolicy@korea.ac.kr